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4.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적격자선정심의회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면적	종사자수	비고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벚꽃로10길 45 (문화공원 내)	336.3㎡	5명	

2) 위탁현황

가) 수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재단 (대표 : 김병후)

나) 위탁기간 : 2021. 5. 1. ~ 2024. 4. 30. (최초위탁 : 2021. 5. 1.)

다) 운영인력 : 총 5명

라) 운영예산 : 384,684천원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3년(2024. 5. 1. ~ 2027. 4. 30.)

2) 위탁내용 : 『독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전반

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 자치활동 지원 등

나) 관내 학교, 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및 법인 등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및 연계 활동에 관한 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선정방법

가) 재계약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평가

(1)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시 재계약, 70점 미만시 위탁 법인 공개 모집 공고

4) 운 영 비 : 연385백만원(전액구비)

3. 재계약 사유

가.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문화, 동아리, 자치, 진로, 봉사, 교류활동 등 청소년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청소년수련시설임.

나. 매년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 요구조사 실시를 통해 청소년들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최하는 평가에서 2022, 2023년 연속 최우수프로그램 및 최우수기관에 선정, 2023년에는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선정됨. 또한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금천유스마켓-ing 등 6개 사업이 선정됨.

다. 2023년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91.8점 획득 및 재계약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83점을 획득하는 등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감안하여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 수탁법인인 (사)한국청소년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6조
- 2)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3조, 제15조
- 3)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1) 15개 자치구 27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 조사 결과 25개 시설에서 전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2)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의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